

의안번호	2218946
의 퇴 인	정태호의원
회 답 일	2026.7.28.
추계번호	26C26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9조의3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연령·지역·소득·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민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간 건강격차 현황을 3년마다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제3항) ○ 제3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내용·방법과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항)	의무규정
2	제19조의4 (건강영향평가)	○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신체·정신·사회·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 신체·정신·사회·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항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19조의3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19조의4 (건강영향평가)	

2. 상세 사유

□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안 제19조의3)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제1항),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제2항)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건강격차 현황을 조사·분석할 경우(제3항),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조사·분석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곤란함
 - 현재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수행하며 건강행태, 만성질환 이환, 영양섭취 등의 지표에 대해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지역별 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건강격차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별도의 건강격차 조사·분석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 추가로 수행할 조사·분석의 방법, 범위, 규모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¹⁾

□ 건강영향평가(안 제19조의4)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 시행 방식(연구용역 발주 또는 전담센터 설립·시스템구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건강영향평가의 항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국가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건강영향 조사·평가제도를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4에 따라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

1) 참고로,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격차 통계 산출이 가능하므로 심층 분석 및 지표 개발 외의 별도 조사비용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2026년 제2차 평가 예산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 18개소를 지정·운영하며 센터 당 약 3억원(국비 50~70%)를 지원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